2027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신청안내서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심의에서 제외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이후의 지원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신청안내서

※본 안내서는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2027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공모일정 **한눈에 보기**

지향점	지원사업명		공고	접수기간	접수방법
예술 창작 지원	예술창작	일반지원 (단년)	2026. 11. 23.	2026. 12. 1. ~ 2026. 12. 23.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집중지원 (다년)			
		생애지원 (생애처음/원로)	2027. 4. 예정	2027. 4. 예정	
예술인 복지 지원	예술인 종합건강검진		2027. 1분기 예정	매월 1~15일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예술인 상해보험		상시		
	예술인 심리상담		2027. 1분기 예정	매월 1~15일	
	예술인 법률상담		2027. 1분기 예정	상시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분기별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2027. 4. 예정	2027. 4. 예정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www.ifac.or.kr

2027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주요 개편 및 유의사항

2027 예술창작지원사업 주요 개편사항은 예술인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2026 예술인 간담회 추진경과

추진일자	내용
8. 28.(금) 오전	예술인 간담회 1차
8. 28.(금) 오후	예술인 간담회 2차
9. 11.(금)	예술인 간담회 3차
9. 30.(수)	예술인 간담회 4차
10. 20.(화)	예술인 간담회 5차
10. 26.(월)	예술지원사업 환류 간담회

신청자격 중 '인천연고' 기준 개편

- 2027년부터는 인천에 거주하는 예술인과 인천에 소재한 등록 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인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더 많은 창작 기회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개인	인천 거주 또는 인천 내 활동실적 3회 이상	인천 거주 예술인 (공고일 기준)
단체	인천 소재 등록단체 또는 인천 내 활동실적 3회 이상	인천 소재 등록단체 (공고일 기준)

※ 신청 자격은 위 '인천 연고 기준'과 '분야별 활동실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행정심의 결격사유 중 '사업장소' 기준 명확화

- 2027년부터는 사업(발표)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하고, 인천 내 사업 추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행정심의 기준을 개선합니다.

※ 대관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며, 미확정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예정 장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행정심의 결격사유 중 변경 사항

2026년	2027년
신청서 양식과 NCAS에 작성한 사업장소가 인천이 아닐 경우 (문학, 출판, 국제교류 제외)	신청서 양식과 NCAS에 작성한 사업(발표)장소가 **인천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구체적인 사업(발표)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문학, 연구/비평, 출판, 국제교류 제외)

<사업장소 관련 행정결격 예시>

- 인천 외 지역 기재: 사업(발표)장소를 '서울시 ○○공연장'으로 기재한 경우
- 사업장소 미정: 사업(발표)장소를 '미정', '추후 확정', '섭외 중' 등으로 기재한 경우
- 사업장소 불명확: 사업(발표)장소를 '인천 일대', '인천 소재 공연장', '인천 내 전시장 예정' 등으로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일반지원 공연 분야 '축제형 사업' 재편

- 2027년부터는 공연 분야의 세부 유형으로 운영하던 '축제형 사업'을 '예술축제' 분야로 통합하고 지원금액 규모를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작품 또는 장르 융합형 예술축제에 대한 창작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2026년		2027년
공연	연극 - 축제형 사업	문화일반 내 '예술축제' 분야로 통합·확대 편성
	음악 - 축제형 사업	
	무용 - 축제형 사업	
	전통 - 축제형 사업	

일반지원 '시각' 분야 기획전 자격기준 개편

-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기획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기획전을 신청할 경우 전시기획자와 참여 작가가 동일인이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일반지원 '작은예술공간' 분야 신청자격 조정

- '작은예술공간' 분야는 2027년부터 NCAS(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와 지원신청서 모두 동일한 '공간명'이 신청주체가 되어야 하며, 세부기준은 34쪽 신청자격을 확인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부기준
공연공간 및 전시공간	아래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공고일 기준, 해당 예술공간에서 3회 이상의 기획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인천 소재 민간 공연공간 및 전시공간 ② 공고일 기준, 공간명으로 등록된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공간 ③ 2027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간 사용 및 기획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④ 사업 기간 내 화재보험 가입이 유지되어야 함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인정기관 확대

-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선정자 및 선정 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의 교육 외에도 '문화예술 분야'의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수료내역도 지원사업자의 필수교육 증빙서류로 인정합니다. 단, 아래 필수사항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교육명 필수사항: 교육명에 '문화예술'을 포함한 '성희롱 예방', '성폭력 예방', '성희롱·성폭력 예방'이라는 단어 포함 필수(문제상황 발생 시 신고처 등의 안내가 미흡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관한 일반적인 교육은 불인정)
  - 인정기관 예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등(민간 협회에서 추진한 교육은 불인정)
  - 교육이수 시기: 2027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기 때문에, 2027년 내 이수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의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 일반지원의 '작은예술공간', '예술축제'분야와 집중지원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사용해야 합니다.

2028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사전 안내

※ 아래 내용은 2028년 지원사업부터 적용을 검토 중인 사항으로, 2027년 지원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향후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2028년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2028 예술창작생애지원사업 공모시기 조정 예정(2027년 11월 동시 공고 예정)**
  - 예술인들의 원활한 공연장·전시장 대관과 안정적인 창작활동 준비를 위해, 당해연도 4월에 진행하던 생애지원사업 공모를 전년도 11월에 통합 공모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2028년 사업부터 적용 예정 (2027년 11월 공고 예정)

2027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공통사항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선정자 및 선정 단체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준수를 위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 대표자 창작활동비 지급방식

- 우리 재단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예술창작활동의 노동권을 인정하여 2027 예술창작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개인 예술인 본인 또는 예술단체의 대표자에게 인천예술인이음카드의 e음캐시로 창작활동비를 지급합니다.
- 지원사업 예산계획 수립 시 신청주체인 예술인 본인 또는 예술단체 대표자 명의의 사례비는 지원금으로 책정할 수 없습니다.

연번	지원결정액 규모	본인 혹은 대표자 창작활동비	지급 방법
1	1천만원 미만	100만원	인천e음캐시 (인천예술인이음카드)
2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200만원	
3	2천만원 이상	250만원	

※ 단, 예술창작일반지원(문학 개인), 예술창작생애지원(원로 개인)은 대표자 창작활동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지원자 책임 신청제

- 지원자 책임 신청제는 신청 주체가 자격요건, 사업목적 등을 스스로 충분히 숙지한 후 그에 부합하여 지원신청서를 충실히 작성하였음을 사전에 동의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인천연고와 활동실적에 대한 증빙 서류는 최종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안내 일정에 따라 제출합니다.
  - 단, 예술창작일반지원 문학분야의 등단출간 증빙 자료는 공모 신청 시 제출합니다.
  - 단, 예술창작일반지원 연구/비평의 실적 자료는 공모 신청 시 제출합니다.
- 지원 자격에 부적합하거나 제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 최종 선정 후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라도 지원 자격 부적합, 자격 제한 및 지원신청 부적격 주체인 사실,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은 취소되며 기 교부된 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향후 지원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분이 부과됩니다.

4. 지원 신청 유의사항

사업 및 분야별 자격사항 확인

- 지원사업 유형과 세부 분야에 따라 신청자격과 대상 사업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 분야별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간 공공재원 중복 지원 불가

- 동일(유사)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천광역시, 인천 기초문화재단, 타 시·도 문화재단 등에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선정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 국제교류 분야에 선정된 사업으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K-아츠 투어링' 또는 'K-아츠 온더고'에 선정된 경우,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원사업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 동일(유사) 사업으로 타 기관 지원사업에 중복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우리 재단에 고지해야 하며, 허위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등 재단이 인정하는 일부 사업은 예외

자격 제한 및 지원신청 부적격 주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단, 공고일 기준 유효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보유 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국·공립(도·시·구·군립) 등 공공 문화예술기관 직원 ※ 선정 이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국비·인천광역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목적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 및 소속·운영 단체
- 19세 미만,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2026년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사업 수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포기한 개인 및 단체
  ※ 단, 인천문화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보조금 관계 법령 또는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중인 예술인 개인 및 단체

  예) 2026년 이전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후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관련 불공정 행위(표절, 임금 체불, 명의 도용, 페이백 등),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단체(「형실효법」 제7조에 따라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

지원신청 불가 사업유형

- 단순 동아리, 취미활동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 지원사업자의 지원금 단순 재교부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창작 및 작품 제작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원작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사업
- 예술 작품성이 희박하고 정치적, 종교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

행정심의 결격사유

- 자격 제한 및 지원신청 부적격 주체가 신청한 경우
- 지원신청 불가 유형의 사업을 신청한 경우
- 필수서류(지정양식의 공모 신청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파일 오류로 제출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사업에 신청한 경우(NCAS 지원분야와 사업신청서 분야가 상이한 경우)
- 신청서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타 사업 양식, 이전년도의 양식 사용 등)
- 지원신청서와 NCAS에 작성한 신청주체가 상이할 경우(단체는 대표자까지 동일해야 함)
- 지원신청서와 NCAS에 작성한 사업(발표)장소가 인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구체적인 사업(발표)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문학, 연구/비평, 출판, 국제교류 제외)

지원사업 간 중복 선정(지원) 제한사항

- 많은 예술인(단체)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 선정을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구분		공모 신청	중복 선정	예시
동일 지원사업 내	같은 분야 2건 이상 신청	X	X	예술창작일반지원 연극분야 2건 신청 불가 ※ 같은 분야에 지원신청서를 2개 이상 제출한 경우, 최초 접수 건만 인정됩니다.
	다른 분야 2건 이상 신청	O	X	예술창작일반지원 연극분야 1건, 국제교류분야 1건 신청 가능(중복 선정 시 택1)
지원사업 간	예술창작일반지원, 예술창작집중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청년예술활동지원,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등	O	X	예술창작일반지원 연극분야 1건, 예술창작집중지원 연극분야 1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1건, 청년예술인 활동지원 공연 분야 1건 신청 가능 (중복선정 시 택1)

- 동일한 신청주체가 여러 지원사업에 중복 선정된 경우 택일하여 하나의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중복 선정 여부는 신청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체 대표자'와 '단체'는 서로 다른 신청 주체로 간주합니다.

2026년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선정자 유의사항

- 2026년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한 개인과 단체는 사업별 정산 기한까지 2026년 사업의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 2026년 지원사업의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27년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 불가, 삭감 또는 취소 등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사업 진행단계별 유의사항

공모신청

단체의 경우, 법적 등록(신고) 필수

-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사례비 원천징수가 의무이므로, 단체로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팀이 신청 자격을 단체로 선택하여 신청하려면 반드시 단체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체등록 방법: 62쪽 참조)

저작권 준수

-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지원사업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이 조치될 수 있습니다. (예: 타인 또는 과거 본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하는 등)
- 기존 작품을 재공연(재발표)하는 경우 등에는 원 저작자와 저작권 사용계약서를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비평/연구 결과물 등을 참조하는 경우 인용 표기와 함께 참고문헌 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관련 안내

- 인공지능(AI) 기술은 예술창작의 방식과 범위를 확장하고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열어주는 한편, 창작자의 역할과 저작권,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예술현장에서의 AI 활용이 창작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 수행 및 창작활동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것을 안내합니다.
  - AI 활용 정보 공개 및 생성 콘텐츠 표시: AI를 활용해 제작한 작품이나 콘텐츠를 공개하는 경우, 관객과 이용자가 AI 활용 여부와 범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절히 안내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실제 인물이나 사건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AI 생성·합성 콘텐츠는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저작권 및 권리 보호: AI를 활용한 창작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활용한 AI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심의의 공정성: AI 활용 여부만을 이유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심의·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심의·평가는 각 지원사업의 목적과 세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 본 안내는 예술현장의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권고사항으로, AI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AI 활용에 대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rko.or.kr/content/6121)

사업운영

사업 운영 및 지원금 집행 기간

- 2027년 3~12월 중 인천에서 공개 발표(실연, 실내·실외 가능)를 완수해야 합니다.
  - 공모 심의결과 발표 전에 진행하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문학, 출판, 연구/비평, 국제교류는 인천에서 공개 발표(실연)를 하지 않아도(예:타 지역 출판사에서 창작집 발간 가능) 무방하나, 2027년 12월 내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 예술창작집중지원 1차년도 사업에 한해 **2027년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지원금 집행도 **2027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 선정자를 위한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설명회는 2027년 3월 중 진행 예정입니다.

사업내용 변경 또는 중지 유의

- 선정 이후 사업 일수, 사업규모, 주요 참여자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조치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변경조치기준표: 56쪽 참고)
- 사업 수행 중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중지하거나 폐지할 경우, 규정에 따라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향후 타 지원사업 심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서면 계약 체결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 공정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상대 예술인 또는 단체와 서면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사업종료 후 지원금 집행 증빙자료로 주요 참여자의 서면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원금으로 예술인 고용보험료의 사업자 부담금(별도 책정 후 납부)과 예술인 부담금(사례금 안에서 미리 떼어서 납부)을 편성/집행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과의 계약 사항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험 발생예상액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산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s://www.kawf.kr/aei/empInsNormalCal.do): 보험료계산기 - 예술인고용보험 모의계산기
- 청소년 출연진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대리인(부모님, 후견인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하단에 청소년 계약자 등의 서명 외에도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청소년 계약자와의 관계, 주소를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받은 후 별도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홍보물 등 후원 표기 관련 유의사항

- 선정사업 관련 홍보·발간물에는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후원을 표기해야 합니다.
  - 표기위치: 판권지, 포스터·브로슈어 하단 등
  - 표기사항: 아래 문구 기재 및 후원 표기
- 문구: 본 ○○○(공연·전시·책자 등)는 인천광역시·인천문화재단 '2027 예술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제작되었습니다.
- 후원: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기관별 CI로 대체 가능)
- 주최/주관: 반드시 신청주체 본인(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표기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 주최 및 주관에는 신청주체 외 인명 혹은 단체명 기입이 불가합니다.

※ 주최 및 주관의 표기가 지원신청서와 다를 경우, 사업주체의 변경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관 및 현장평가 협조

- 사업 수행 시 재단에서 실시하는 전문가 현장평가 및 담당자 참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현장평가 결과는 차년도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종료

지원금 집행내역 회계 검증 의무화

- 공모에 선정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금 정산 회계검사제도를 운영합니다. (문학 개인, 원로 개인 제외)
- 분야별로 지정된 회계법인이 있으며, 공모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회계검증 수수료는 최종 교부되는 지원금 규모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수익금) 모두 검증 대상입니다.

[2027 회계검증수수료 단가]

지원금 규모	수수료(원)
700만원 미만	197,000
700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	238,000
1천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18,000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378,000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410,000
5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569,000
6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616,000
7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663,000
8천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	710,000
9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59,000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954,000

지원사업 수익금 관리 및 사용기준

-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반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수익금을 해당 지원사업에 재투여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익금은 해당 지원사업에 재투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 교부 목적에 맞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과 동일한 범위 내 사용 가능)
-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지원금 통장과 별도의 통장으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정산 시 수익금 발생내역과 집행증빙자료를 지원금과 구분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은 공공재원으로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사업이므로, 수익금(티켓 판매 수입 등)을 개인 또는 단체의 이윤으로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 해당 지원사업에 재투여하지 않은 수익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 관련 조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규정」 제7조
-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운영관리규칙」 제18조·제20조·제22조·제24조

2027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신청안내서

목차

2027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공모일정 한눈에 보기 ····· 3
2027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주요 개편 및 유의사항 ····· 4
2027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공통사항 ····· 7

예술창작일반지원 사업개요 및 신청안내 공통사항 ····· 20
예술창작일반지원 분야별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1. 문학 ····· 24
2. 시각 ····· 26
3. 공연(연극, 음악, 무용, 전통) ····· 28
4. 국제교류 ····· 30
5. 연구/비평, 출판 ····· 32
6. 작은예술공간 ····· 34
7. 예술축제 ····· 36

예술창작집중지원 사업개요 및 신청안내 공통사항 ····· 40
예술창작집중지원 분야별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공연, 시각 ····· 44

예술인 복지 사업개요 ····· 48

예술창작생애지원 사업개요 ····· 52

공모 신청 단계별 유의사항
1. 공모 신청 ····· 54
2. 사업 변경 ····· 56
3. 집행 및 정산 ····· 57
4. 사례비 소득세 원천징수 ····· 59
5. 예술인 고용보험 ····· 60
6.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 절차(고유번호증 발급) ····· 62
7.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창작활동 자가 점검표 ····· 63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규정 및 지원금 운영관리규칙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규정 ····· 66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운영관리규칙 ····· 69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이용안내 ····· 80

인천문화재단 통합신고센터 안내 ····· 85

인천문화재단 뉴스레터 '파도파도' 안내 ····· 89

2027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일반지원
사업개요 및 신청안내
공통사항

예술창작일반지원
사업개요

지원 분야		지원내용	
		사업유형	금액(만원)
문학		● 개인창작집	정액 600
		● 문예지	최대 1,000
시각		● 개인전	최대 800
		● 기획전	최대 2,500
공연	연극	● 극예술 등	최대 2,500
	음악	● 기악, 관현악, 대중음악(창작물) 등	최대 2,500
		● 오페라	최대 4,300
	무용	●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등	최대 2,500
	전통	● 전통연희, 국악, 창극(가무극) 등	최대 2,500
문화일반	국제교류	● 예술인(단체)의 출국을 전제로 하는 국제교류 사업	최대 1,000
	연구/비평, 출판	● 문화예술을 담론으로 하는 연구, 비평 ● 분야별 문화예술 출판	최대 800
	작은예술공간	● 공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연, 전시 등의 시리즈 프로그램	최대 2,500
	예술축제	● 예술창작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축제	최대 5,000

예술창작일반지원
신청안내 공통사항

※ 본 내용은 공통사항으로 세부 분야별 안내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온라인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모든 서류는 파일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
● 접수기간: **2026. 12. 1.(화) 10:00 ~ 2026. 12. 23.(수) 17:59:59**
17:59:59를 넘으면 제출 불가

심의 기준 및 절차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부합 여부, 필수제출 서류 충족 여부
● 2차: 전문가 서류심의
- 사업계획, 운영능력, 사후효과 등에 대한 심의
● 3차: 전문가 인터뷰심의 (※ 문학분야는 인터뷰심의 없음)
- 사업의 현실성, 수행역량, 발전가능성에 대한 심층면접
(서류심의 통과자에 한하여 실시)
-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분야별 신청 건수에 따라, 동일 분야 내에서 분리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심의 발표

선정심의 진행 2027. 1. ~ 2027. 3.
선정결과 공고 2027. 3. 12.(금)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예정
※ 공모 심의결과 발표 전에 진행하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현장안내창구 운영

● **기간: 2026. 12. 15.(화) ~ 2026. 12. 18.(금)**
● 시간: 10:00 ~ 17:00(점심시간 오후 12시 ~ 1시 제외)
● 장소: 인천아트플랫폼 A동 1층
※ 본 창구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이용이 어려우신 분을 안내하기 위해 운영하며, 지원신청서 내용 작성에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다.
※ 반드시 필수서류(지원신청서, 분야별 요구서류)를 작성한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재단 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선정된 사업이라도 허위사실과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사유가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26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수행자(개인/단체)는 사업별 정산 기한까지 2026년 지원사업의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처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 예술지원팀

- 문학: sherlock10@ifac.or.kr
- 시각: jjy@ifac.or.kr
- 음악: kyb@ifac.or.kr
- 연극: khb@ifac.or.kr
- 무용: kyj129@ifac.or.kr
- 전통: yklee@ifac.or.kr
- 문화일반: yes@ifac.or.kr

※ 예술창작일반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분야별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기간 중 전화량이 폭주하여 원활한 안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 인천문화재단은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7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일반지원
분야별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예술창작일반지원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1 문학

대상사업

- 2027년 3월부터 12월까지 출판이 가능한 문학 분야의 예술창작활동 사업
- 개인창작집, 문예지 등 문학 단행본 발간 사업 ※ 실물 책자 발간 필수

지원규모

- 개인창작집: 정액 600만원(창작활동비 및 세금 포함)
  ※ 시상금 형태 지급으로 정산 생략, 2024년부터 휴식년제가 도입됨에 따라 2026년 지원금 수혜자는 신청 불가
- 문예지: 최대 1,000만원

신청자격	자격기준
개인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①과 ②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① 국내 신춘문예 및 문학 전문매체에 등단하거나 개인창작집을 출간한 문인 ②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단체	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 등록 문인단체

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①	지원신청서(지정양식)		● 인천문화재단 지정 양식 (사업계획, 신청자 소개서, 주요참여자 소개서 등)
필수②	개인	등단 출간증빙 자료	● 등단 또는 개인창작집 증빙자료(사본을 스캔하여 제출) - 신춘문예, 문학상 등: 상장, 당선자 명단이 기재된 면 - 개인창작집: 표지 및 목차, ISBN 기재면 - 문예지: 표지 및 목차(작품명과 작가명 명기), ISSN 기재면
		출판 예정 원고	● 본 지원사업으로 발간하는 단행본에 수록할 무기명 원고 **- 기 발간된 개인창작집·단행본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함** - 문예지, 전문잡지 등에 발표한 작품은 응모 가능
	단체	문예지 최신호	● 최근 3년 내 발간 문예지 최신호 1호 전체 (PDF 전자파일 제출)

장르	시·시조·동시	소설·동화·희곡	문학평론(비평)·수필
분량	20편 이상	단편: 3편 이상 중편: 2편 이상 장편: 1편 이상	5편 이상

※ 선정 이후 해당 원고를 출간할 것을 전제로 심의하며, 제출원고의 80% 이상 수록 필수

※ hwp, doc 등 파일형태로 제출

선정 후 제출서류

인천연고 증빙 자료	개인	●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중 1부(마스킹 필수) ※ 공고일 기준 거주지가 반드시 인천이어야 함 ※ 필명으로 신청했을 경우, 필명 확인자료 제출 필수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공고일 기준 등록소재지가 반드시 인천이어야 함

유의사항

- 개인창작집 발간은 휴식년제로 운영하여 2026년 문학분야 개인창작집으로 지원받은 경우 올해 개인창작집 발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7년 개인창작집 발간으로 지원받을 경우, 2028년 개인창작집 발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시민 대상 프로그램은 지역문화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작품으로 응모한 경우
  - 기존 작품을 표절 또는 모방한 경우(선정 및 출판 후 표절이 확인된 경우 포함)
  - 발간된 내용이 지원신청 당시 제출한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2027년 12월 내 출판되지 않거나 제작을 중단·포기하는 경우
- 사업의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조치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결과물 제출

- 단행본 2부

2 시각

대상사업

- 2027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천에서 진행하는 시각 분야의 예술창작 활동
  - 작품제작·발표: 인천에서 공개 발표해야 함(실내·실외 모두 가능)
- 예술, 인문학, 기술, 장르 등 결합 혹은 융합 형태의 모든 전시

지원규모

개인전: 최대 800만원
기획전: 최대 2,500만원

신청자격	세부기준 및 증빙자료
개인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①과 ②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① 3회 이상 창작활동을 한 예술인 ②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①과 ②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① 3회 이상 창작활동을 한 예술단체 ② 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 등록 단체

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① 지원신청서(지정양식)	● 인천문화재단 지정 양식 (사업계획, 신청자 소개서, 주요참여자 소개서 등)
선택① 포트폴리오	● 포트폴리오 1부 (자유형식, 별도 자료로 제출) ※ 도록, 브로슈어, 영상 등 자유형식 파일로 제출 ※ 미제출 시 심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제출서류

창작활동 증빙자료 (지정양식)		● 주요 창작활동실적 (인천문화재단 지정 양식) ● 창작활동증빙자료 3부 ※ 신청자 본인 또는 단체 명의가 기재된 계약서, 포스터, 리플렛, 도록, 지원사업 선정확인서만 인정함 ※ 졸업전, 학위청구전, 아트마켓 참여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개인자격으로 기획전을 신청하는 경우 기획 경력 증빙자료로 제출 (신청 주체 본인의 전시기획 경력 3회 필수)
인천연고 증빙 자료	개인	●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중 1부(마스킹 필수) ※ 공고일 기준 거주지가 반드시 인천이어야 함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공고일 기준 등록소재지가 반드시 인천이어야 함

유의사항

- 예술창작일반지원은 '단체'의 연례적인 협회전, 정기전, 회원전의 지원을 지양하며, 단체 회원의 작품으로 구성된 '기획전', '주제전' 형태의 사업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 '기획전'에는 전시기획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신청서 내 전시기획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기획전'은 신청자 외 참여작가가 2인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획전'에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 전시기획자이어야 합니다.
- '기획전'에 단체로 신청하는 경우, 단체 소속이 아닌 외부 전시기획자를 섭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기획전'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전시기획자가 3회 이상의 전시기획을 수행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지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주요사항 변경 시, 변경조치 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결과물 제출

- 브로슈어 또는 도록 2부

3 공연(연극, 음악, 무용, 전통)

대상사업

- 2027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천에서 진행하는 공연 분야의 예술창작 활동
  - 작품제작·발표: 인천에서 공개 발표해야 함(실내·실외 모두 가능)
- 예술, 인문학, 기술, 장르 등 결합 혹은 융합 형태의 모든 공연
  - 창작 초연작품과 레퍼토리를 위한 기존 작품의 재공연(번역, 번안 등) 모두 가능

지원규모

구분	대상사업	지원규모(만 원)
연극	• 극예술 등	최대 2,500
음악	• 기악, 관현악, 대중음악(창작물) 등	최대 2,500
	• 오페라	최대 4,300
무용	•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등	최대 2,500
전통	• 전통연희, 국악, 창극(가무극) 등	최대 2,500

신청자격	세부기준
개인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①과 ②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① 3회 이상 창작활동을 한 **예술인** ②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①과 ②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① 3회 이상 창작활동을 한 **예술단체** ② 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 등록 단체

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①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 인천문화재단 지정 양식 (사업계획, 신청자 소개서, 주요참여자 소개서 등)
선택① 공연세부자료	• 세부 분야별 자유 양식 (별도 자료로 제출) ※ 미제출 시 심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극, 전통연극) 프로그램 1부, 시놉시스 또는 대본 1부 - (음악, 전통음악) 악보 1부, 공연 프로그램 1부 - (무용, 전통무용) 프로그램 1부, 안무계획서 또는 대본 1부
선택(해당시)② 저작권자료	• 작품의 저작권 관련 확인서류(계약서 등) - 창작일 경우 극작가 또는 작곡가 등의 확인서 및 대본, 시나리오, 악보, 총보, 저작권 등록증 등 증빙자료 첨부 필수

선정 후 제출서류

창작활동 증빙자료 (지정양식)		• 주요 창작활동실적 (인천문화재단 지정 양식) • 창작활동증빙자료 3부 ※ 신청자 본인 또는 단체 명의가 기재된 계약서, 포스터, 리플렛, 도록, 지원사업 선정확인서만 인정함 ※ 졸업작품, 학위청구공연, 아트마켓 참여 등은 인정하지 않음
인천연고 증빙자료	개인	•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중 1부(마스킹 필수) ※ 공고일 기준 거주지가 반드시 인천이어야 함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공고일 기준 등록소재지가 반드시 인천이어야 함

유의사항

- 저작권 확인이 필요한 창작작품 신청 시 관련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저작권 사용계약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 등으로 이루어진 동호회 발표활동, 시민문화제 등은 지역문화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에서 지원금을 받는 무형문화유산 전승 관련 공연 사업(예: 정기발표회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 주요사항 변경 시, 변경조치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결과물 제출

- 브로슈어 또는 공연 영상 자료 2부

4 국제교류

대상사업

- 2027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가능한 예술창작분야의 국제교류 활동
- 문화예술 전 분야(문학, 시각, 공연 등)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단체)의 출국을 전제로 하는 국제교류 활동

지원규모

최대 1,000만원

신청자격	세부기준
개인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①과 ②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① 3회 이상 창작활동을 한 **예술인** ②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①과 ②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① 3회 이상 창작활동을 한 **예술단체** ② 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 등록 단체

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①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 인천문화재단 지정 양식 (사업계획, 신청자 소개서, 주요참여자 소개서 등)
필수② 출국활동 자료	1. 초청장 및 프로그램 및 행사와 관련한 자료 (※ 초청인이 개인일 경우 불인정) 2. 초청기관 소개자료 및 프로그램 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팜플릿 등 각종 안내자료)

선정 후 제출서류

창작활동 증빙자료 (지정양식)		● 주요 창작활동실적 (인천문화재단 지정 양식) ● 창작활동증빙자료 3부 ※ 신청자 본인 또는 단체 명의가 기재된 계약서, 포스터, 리플렛, 도록, 지원사업 선정확인서만 인정함 ※ 졸업전, 학위청구전, 아트마켓 참여 등은 인정하지 않음
인천연고 증빙 자료	개인	●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중 1부(마스킹 필수) ※ 공고일 기준 거주지가 반드시 인천이어야 함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공고일 기준 등록소재지가 반드시 인천이어야 함

유의사항

- **해외 초청 기관**의 변경은 지원금 취소 사유이므로 확정된 기관과의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교류 단체와의 협력 정도, 향후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1회성 한인회 초청 행사 등의 사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국제교류 분야에 선정된 사업으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K-아츠 투어링' 또는 'K-아츠 온더고'에 선정된 경우,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원사업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 국제 아트페어 등 참가비를 지불하는 상업적 행사 방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 주요사항 변경 시, 변경조치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결과물 제출

- 브로슈어 또는 도록 또는 공연 영상 등 교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부

5 연구/비평, 출판

대상사업

- 2027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가능한 사업
- 문화예술을 담론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비평 활동
- 분야별 문화예술 출판

지원규모

- 최대 800만원

신청자격		세부기준
연구/비평	공통	● 분야 불문, 연구자/비평가/기획자/창작자 등 구분 없이 모두 가능 ● 연구/비평 매체를 통한 3회 이상의 연구/비평 실적 보유 - 논문, 비평문(신문/잡지 기고, 전시/공연 도록 및 프로그램 북 등) 등 이론적 활동에 근거한 모든 실적임(단, SNS 게시글, 학위논문 제외)
	개인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①과 ②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① 3회 이상 연구/비평 활동을 한 **예술인** ②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①과 ②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① 3회 이상 연구/비평 활동을 한 **예술단체** ② 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 등록 단체
출판	개인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①과 ②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① 3회 이상 창작활동을 한 **예술인** ②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①과 ②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① 3회 이상 창작활동을 한 **예술단체** ② 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 등록 단체

신청 시 제출서류

연구비평	
필수① 지원신청서(지정양식)	● 인천문화재단 지정 양식 (사업계획, 신청자 소개서, 주요참여자 소개서 등)
필수② 연구/비평 실적 및 증빙자료	● 주요 연구/비평 실적 3회 (인천문화재단 지정 양식) ● 연구/비평 증빙자료 3부 ※ 신청자 본인 또는 단체 명의가 기재된 논문, 비평문(신문/잡지 기고, 전시/공연 도록 및 프로그램북 등), 문화예술기획 등 이론적 활동에 근거한 실적

출판	
필수① 지원신청서(지정양식)	● 인천문화재단 지정 양식 (사업계획, 신청자 소개서, 주요참여자 소개서 등)
필수② 출판 예정원고	● 출판 예정 원고 및 목차 (별도 자료로 제출) ※ 선정 이후 해당 원고를 출간할 것을 전제로 심의하며, 제출원고의 80% 이상 수록 필수 ※ hwp, doc 등 파일형태로 제출

선정 후 제출서류

연구비평		
인천연고 증빙 자료	개인	●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중 1부(마스킹 필수) ※ 공고일 기준 거주지가 반드시 인천이어야 함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등록소재지가 **공고일 기준** 반드시 인천이어야 함

출판		
창작활동 증빙자료 (지정양식)		● 주요 창작활동실적 (인천문화재단 지정 양식) ● 창작활동증빙자료 3부 ※ 신청자 본인 또는 단체 명의가 기재된 계약서, 포스터, 리플렛, 도록, 지원사업 선정확인서만 인정함 ※ 졸업전, 학위청구전, 아트마켓 참여 등은 인정하지 않음
인천연고 증빙 자료	개인	●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중 1부(마스킹 필수) ※ 공고일 기준 거주지가 반드시 인천이어야 함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공고일 기준 등록소재지가 반드시 인천이어야 함

유의사항

- 연구/비평활동비 사용 범위: 외부 전문가 사례비, 인쇄비, 자료구입비(전체 예산의 10% 범위 내) 등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판에 대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작품으로 응모한 경우
  - 선정 당시 계획한 내용과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
  - 제작기간 내에 출판되지 않거나 제작을 중단·포기하는 경우
  - 기존 작품을 표절 또는 모방 등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최종 선정 및 출판 후 표절이 확인된 경우도 포함)
- 사업 주요사항 변경 시, 변경조치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결과물 제출

연구/비평	● 자유형식의 보고서 2부(전자파일 및 인쇄본)
출판	● 실물 단행본 2부

6 작은예술공간

대상사업

- 2027년 3월부터 12월까지 작은예술공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 해당 예술공간에서 진행하는 일회성이 아닌 시리즈 프로그램
    (기획공연 시리즈, 기획전시, 기타 예술프로젝트 등)

지원규모

- 최대 2,500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사업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신청자격	세부기준
공연공간 및 전시공간	아래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공고일 기준, 해당 예술공간에서 2026년 내 3회 이상의 기획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인천 소재 민간 공연공간 및 전시공간 ※ 대관 실적은 포함하지 않음 ※ 공연공간은 100석 내외 소규모 공간을 권고함 ② 공고일 기준, 공간명으로 등록된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공간 ③ 2027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간 사용 및 기획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 사업 기간 도중에 임차가 중단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④ 사업 기간 내 화재보험 가입이 유지되어야 함

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① 지원신청서(지정양식)	● 인천문화재단 지정 양식 (사업계획, 주요참여자 소개서 등)
	필수 ② 공간소개서	● 공간 소개서 (인천문화재단 지정 양식)
	선택 ① 공간등록증	● 공연장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 (해당 시)

선정 후 제출서류		
	인천소재 공간운영 증빙서류	● 2027년 12월까지 인천소재 공간운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 계약 사실관계 확인 서류 ※ 단, 기존 계약기간이 2027년 12월 이전인 경우, 교부신청 전까지 2027년 12월까지 계약이 보장된 서류 보완 제출
	프로그램 운영실적	● 주요 프로그램 운영실적 (인천문화재단 지정 양식) ● 2026년 프로그램 운영실적 3부 ※ 해당 공간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약서, 포스터, 리플렛, 도록, 지원사업 선정확인서, 출판물 등만 인정하며, 공간 명의가 기재되어야 함

유의사항

- 지원 신청 시 반드시 공간명의로 지원해야 합니다.
- 지원금으로 임차료와 같은 공간운영비 집행과 자산 구입은 불가합니다.
- 사업의 주요사항 변경 시, 변경조치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수행 시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
- 아래 공간의 경우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간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공간
  -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운영비를 지원받는 공간
  - 2027년에 유사한 사업(문화공간 운영사업)으로 국비/시비 지원 선정된 공간

※ 지원 선정 시, 지원금 교부신청 전까지 화재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7 예술축제

대상사업

- 2027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천에서 진행하는 예술축제
- 예술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축제여야 하며, 장르 융합형 예술축제도 가능함

지원규모

- 최대 5,000만원

신청자격	세부기준
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①과 ②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① 3회 이상 창작활동을 한 예술단체 ② 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 등록 단체

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①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 인천문화재단 지정 양식 (사업계획, 신청자 소개서, 주요참여자 소개서 등)
선택 ① 축제 운영 실적	● 예술축제 운영실적(1회 이상) 증빙자료 1부(자유양식, 별도 자료로 제출) ※ 최근 주최/주관한 축제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포스터, 리플렛 등)

선정 후 제출서류

창작활동 증빙자료 (지정양식)	● 주요 창작활동실적 (인천문화재단 지정 양식) ● 창작활동증빙자료 3부 ※ 신청 단체 명의가 기재된 계약서, 포스터, 리플렛, 도록, 지원사업 선정확인서만 인정함 ※ 졸업전, 학위청구전, 아트마켓 참여 등은 인정하지 않음
인천연고 증빙 자료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공고일 기준 등록소재지가 반드시 인천이어야 함

유의사항

- 본 예술축제 분야는 인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다양하게 선보임과 동시에, 해당 장르의 창작활동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므로, 단일 공연·전시 발표 중심의 사업은 해당 분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축제 분야의 지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시민 동아리•동호회 발표 중심 행사, 시민문화제, 주민참여형 축제 등)
- 지원신청 시 축제 프로그램에 포함된 작품의 저작권 및 공연·전시·상영 등에 필요한 사용 권한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습니다.
- 선정단체는 축제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행사보험 가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 주요사항 변경 시, 변경조치 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수행 시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

결과물 제출

- 예술축제 결과자료(프로그램북, 리플릿 등) 2부
- 예술축제 운영기록 영상자료 2부

2027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집중지원
사업개요 및 신청안내
공통사항

예술창작집중지원
사업개요

분야	최대 지원금(만원)	지원내용
공연 (연극, 음악, 무용, 전통)	1차년도: 1,500	● 1차년도 - 창작 준비(역량강화, 조사연구, 쇼케이스 공연 등) 과정 지원 ● 2차년도 - 1차년도(2027년) 사업의 중간 발표물(공연, 전시 등) 평가를 통해 2차년도(2028년) 지원 여부 결정
	2차년도: 6,000	
시각	1차년도: 1,000	
	2차년도: 5,000	

※ 대표자 창작활동비는 인천예술인이음카드 e음캐시로 별도 지급
※ 1차년도 조사연구와 관련한 예산집행은 국내로 한정

예술창작집중지원
신청안내 공통사항

※ 본 내용은 공통사항으로 세부 분야별 안내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온라인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모든 서류는 파일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
- 접수기간: **2026. 12. 1.(화) 10:00 ~ 2026. 12. 23.(수) 17:59:59**
  17:59:59를 넘으면 제출 불가

심의 기준 및 절차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부합 여부
- 2차: 전문가 서류심의
  - 사업계획, 운영능력, 사후효과 등에 대한 심의
- 3차: 전문가 인터뷰심의
  - 사업의 현실성, 수행역량,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면접 (서류심의 통과자에 한하여 실시)
  -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심의 발표
선정심의 진행 2027. 1. ~ 2027. 3.
선정결과 공고 2027. 3. 12.(금)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예정

현장안내창구 운영
- **기간: 2026. 12. 15.(화) ~ 2026. 12. 18.(금)**
- 시간: 10:00 ~ 17:00(점심시간 오후 12시 ~ 1시 제외)
- 장소: 인천아트플랫폼 A동 1층

※ 본 창구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이용이 어려우신 분을 안내하기 위해 운영하며, 지원신청서 내용 작성에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다.
※ 반드시 필수서류(지원신청서, 분야별 요구서류)를 작성한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재단 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선정된 사업이라도 허위사실과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사유가 판명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26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수행자(개인/단체)는 사업별 정산 기한까지 2026년 지원사업의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 주요사항 변경 시, 변경조치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 예술지원팀** ● 공연(연극, 음악, 무용, 전통): jyoon@ifac.or.kr ● 시각: yklee@ifac.or.kr ※ 예술창작집중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분야별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기간 중 전화량이 폭주하여 원활한 안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문화재단은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7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집중지원
분야별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예술창작집중지원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1 공연, 시각

대상사업

- 2027년 3월부터 **11월까지** 인천 내에서 진행하는 사업(1차년도 기준)
- 우수 기획전시 실현을 위한 심화 연구와 전시 사전 준비 단계를 포함해 인천 예술현장에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년 프로젝트형 기획전시 지원
- 다년간 체계적인 진행 과정이 필요한 공연예술 창작 프로젝트로 단순 창작 발표 형식이 아닌 2개년에 걸쳐 단계적 개발이 수반되는 과정 중심의 공연 창작

지원기간

- 2년 다년지원(2027~2028년)
- 1차년도(2027년) 사업 실행 후, 중간 평가를 통해 2차년도(2028년) 지원 여부 결정

지원규모

시기	공연	시각
1차년도(2027년)	최대 1,500만원	최대 1,000만원
2차년도(2028년)	최대 6,000만원	최대 5,000만원

신청자격	세부기준
개인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①과 ②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① 3회 이상 창작활동을 한 **예술인** ②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①과 ②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① 3회 이상 창작활동을 한 **예술단체** ② 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 등록 단체

지원시기	지원 내용	
1차년도	● 창작준비(역량 강화, 조사연구비 등) ※ 해외리서치 불가 ● 창작발표 제작비 ● 전문가 비평 컨설팅, 홍보 등	● 창작 및 진행경과 제출 ● 중간 발표(공연, 전시 등), 이에 대하여 2027년 12월 중 계속지원 심의 예정
2차년도	● 창작발표 제작비 ● 전문가 비평, 컨설팅, 홍보 등	● 최종 공연 또는 전시 발표

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① 지원신청서(지정양식)		● 인천문화재단 지정 양식 (사업계획, 신청자 소개서, 주요참여자 소개서 등)
필수 ② 포트폴리오		● 포트폴리오 1부 (자유형식, 별도 자료로 제출) ※ 공연 분야 신청 시, 신청주체의 공연 영상 제출 필수(링크 또는 파일)

선정 후 제출서류

창작활동 증빙자료 (지정양식)		● 주요 창작활동실적 (인천문화재단 지정 양식) ● 창작활동증빙자료 3부 ※ 신청자 본인 또는 단체 명의가 기재된 계약서, 포스터, 리플렛, 도록, 지원사업 선정확인서만 인정함 ※ 졸업발표회, 학위청구전, 아트마켓 참여 등은 인정하지 않음
인천연고 증빙자료	개인	●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중 1부(마스킹 필수) ※ 공고일 기준 거주지가 반드시 인천이어야 함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공고일 기준 등록소재지가 반드시 인천이어야 함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 '예술창작집중지원'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존 레퍼토리를 활용하는 경우
  - 상업적 목적이 강한 전시, 공모전, 수상전 등 기획 의도가 불명확하거나 관례적인 회원전과 협회전, 연례전, 학위청구전 등
- 2027년 11월까지 1차년도 활동 완수 후 2027년 12월 1주 내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 12월 중 2차년도(2028년) 지원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 사업 주요내용 변경 시 변경조치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삭감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차년도 사업 수행 시, 조사연구와 관련된 예산집행은 국내로 한정합니다.
- 사업 수행 시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
- 2차년도 사업 수행 시, 1차년도에 참여한 핵심 창작진이 변경되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 핵심 창작진 범위

시각	연극	음악/뮤지컬	무용	전통	창작오페라
기획자	극작가, 연출가	작가, 연출가, 작곡가	안무가	연출가, 작곡가	작가, 작곡가

2027
인천문화재단

예술인 복지
사업개요

예술인 복지
사업개요

인천문화재단은 직업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 복지와 창작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건강 지원 - 종합건강검진

지원 대상	●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인천 거주 예술인(2027년 기준, 홀수 연도 출생자)
지원 내용	● 재단 협력 의료기관의 종합건강검진 프로그램 지원
지원 범위	● 연 1회, 격년 지원
사업 일정	● 2027년 1분기 공고 예정 ● 매월 1일~15일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건강 지원 - 상해보험

지원 대상	●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인천 거주 예술인(자동가입)
지원 내용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 수술비, 성폭력범죄상해, 특정 손가락·발가락 수술비, 사이버명예훼손 등
보장 기간	● 2026년 5월 31일 ~ 2027년 5월 30일(청구시효 3년)
청구 방법	● 자격 기준 및 보험금 청구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로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센터(02-6952-1185 / 02-2135-9454), claim2135@tpakorea.com

건강 지원 - 심리상담

지원 대상		●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인천 거주 예술인(격년 지원)
지원 내용	개인	● 정서·성격 검사, 예술 활동 및 직업문제, 심리건강, 위기 개입 등을 위한 개인 상담 및 심리검사
	가족(택1)	● (부부)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창작활동 병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 본인, 배우자 상담 ● (자녀) 9세 이하 자녀의 양육 코칭, 놀이 치료
지원 범위		● 심리 검사 및 최대 12회기 상담 지원(프로그램별 상이)
사업 일정		● 2027년 1분기 공고 예정 ● 매월 1일~15일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법률상담

지원 대상	● 인천 거주 예술인 및 단체(예비예술인 포함)
지원 내용	● 계약, 불공정행위, 저작권, 노무·사회보험, 예술인고용보험, 세무·회계, 기타 등
운영 기준	● 당해연도 내 최대 3건의 상담 신청 및 진행 가능
사업 일정	● 2027년 1분기 공고 예정 ● 상시접수

역량강화 교육

지원 대상	● 예비 예술인을 포함한 인천 연고 전문 예술인, 예술단체
지원 내용	● 예술 창작과 창업 등의 활동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 영역(장르)별, 생애주기별 세분화된 맞춤형 교육 과정
사업 일정	● 분기별 프로그램 공고 및 신청 안내 예정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 인천 연고 전문 예술인, 예술단체
지원 내용	● 인천 소재 창작공간(연습실, 작업실)의 월 임차료 지원 ● 연간 월 임차료의 50% 기준 ● 공고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건에 한하며, 계약 당사자(본인)에 한해 지원 가능
지원 범위	● 최대 500만원, 격년 지원
사업 일정	● 2027년 4월 내 공고 예정

2027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생애지원
사업개요

예술창작생애지원
사업개요

※ 2027년 4월 공고예정
※ 2028년부터는 예술창작일반지원사업과 동일한 시기에 통합 공모 시행 예정(2027년 11월 중 공고 예정)

1. 대상사업

- 2027년 6월부터 12월까지 인천에서 진행하는 예술창작활동

2. 분야별 지원사항

구분		지원 자격 및 지원 사항	지원금	분야
생애처음		• 공고일 기준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 이력이 없는 70세 미만의 인천 거주 예술인 개인(생애 최초 1회 지원) ※ 해당사업: 예술창작일반·집중·생애지원, 예술표현활동지원, 인천형예술인지원, K-Arts 청년창작자지원, 청년예술인창작지원, 청년예술활동지원	정액 500만원	문학 시각 공연
원로	개인	• 공고일 기준 70세 이상의 인천 거주 예술인 개인 • 2026년 원로(개인) 분야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격년 지원)	정액 500만원 (제세금 포함, 시상금 형식으로 지급)	
	단체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70세 이상인 인천 소재의 등록단체 • 2026년 원로(단체) 분야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격년 지원)	정액 1,000만원	

2027
인천문화재단

공모 신청
단계별 유의사항

공모 신청

단계별 유의사항 안내

1 공모 신청

연번	구분	내용
1	사업명	●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명을 기재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내 기재사항과 동일해야 합니다. (출판의 경우 책 제목)
2	사업기간	● 총사업기간: 사업 준비기간부터 사업 종료 후 1개월까지의 기간으로 2027년 12월(집중지원 1차년도는 2027년 11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발표일: 본 공연일, 개막부터 폐막까지 전시기간, 창작/문예집 출간일 등으로 준비기간을 마치고 외부에 실연/공개하는 날(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3	발표장소	● 사업이 수행되는 구체적인 장소를 기재합니다. ● 여러 지역을 순회하는 등 2곳 이상일 경우에는 작성공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기재하거나 '○○○(대표장소) 등 ○개처'로 기재합니다.
4	예산 계획	**1) 본인 혹은 단체 대표자 창작활동비** ● 개인 및 단체의 대표자에게 창작활동비를 재단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 따라서 예산계획에서 개인(본인), 단체의 대표자 창작활동비를 별도 편성하지 않습니다. ※ 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필요시 대표자 창작활동비를 지원금 예산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예산 일반사항** ●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작성합니다. (필수사항) ● 55쪽의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을 참고해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비 산출근거는 사전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근거 없이 사업비를 과다 책정할 경우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체부담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체부담금을 편성할 경우 해당금액도 100% 정산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지정된 항목 내에서 사전에 계획한 항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결과보고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술인고용보험제도에 따른 고용보험료 사업주(지원사업자)부담분 납부액 또한 지원금 항목 내에서 편성할 수 있으며 편성하지 않을 경우, 자부담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

NCAS 항목		용도	적용 내용
비목	세목		
운영비	일반 수용비	사례비	작곡료, 편곡료, 작사료, 부지휘료, 연습피아니스트료, 조율비, 연출료, 감수료, 안무료, 무대감독료, 음향감독료, 조명감독료, 무대미술, 의상비, 연출 등 조수료, 메이크업, 대본료, 번역 가사료, 작품사용(저작권)료, 지휘료, 연주료, 솔리스트료, 합창료, 출연료, 기획자 및 진행 요원 임금 등 모든 인건비성 사례비 ※ 단체의 상근인력 등을 위한 보수-인건비는 책정 불가능
		홍보 및 마케팅	일체의 **홍보물 제작**에 관련된 비용
		제작비	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를 제작하는 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
		재료비	미술, 사진, 혹은 여타의 장르에서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발간비	**작품집, 악보집, 도록 등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 - 단, 비용의 규모가 크지 않은 리플렛, 포스터 등의 제작은 일반수용비> 홍보 및 마케팅으로 설정 - 도록 역시 규모가 작다면 일반수용비>홍보 및 마케팅으로 설정해도 무방
		기타운영비	회계검증수수료, 세금(원천세, 예술인 고용보험료), 우편료, 여비, 금융수수료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나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차료	대관료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의 사용, 혹은 그에 딸린 부대시설을 대관(부대설비비 포함)할 때 드는 비용
		임차료	모니터, 컴퓨터, 노트북, 빔프로젝터, 음향장비, 악기, 영상장비 등 일체의 장비나 소품을 대여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 설정
		교통 및 체제비	* 예술창작일반지원 국제교류 분야만 사용 가능 * 사업 수행을 위해 출국하는 국가 간 왕복 운임 등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여비규정 단가를 초과하여 편성·지급 금지)

※ 연구/비평 분야의 활동비 사용 범위: 외부 전문가 사례비, 인쇄비, 자료구입비(전체 예산의 10% 범위) 등

2 사업 변경

지원사업 선정 이후 실제 사업 수행 시 지원신청 대비 사업일수/횟수, 사업장소, 주요 참여자 구성 등의 변경정도가 아래의 변경조치기준표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행 가능한 사업규모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변경조치 기준표 】

변경내역		변경정도	조치사항	비고
사업주체	주최/주관	사업주최자의 변경	지원금 취소	
사업일정	일수/횟수	총 사업 일수 및 사업 횟수가 50%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지원금 취소	
사업규모	사업규모	사업규모가 50%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전시작품 수, 참여 작가 수, 프로그램 수 등)	지원금 취소	
사업일시	개최시기	사업개최일(시작일)이 지원신청 시보다 2개월 이상 미루어지는 경우	사안에 따라 승인 결정	
사업장소	사업장소	사업장소의 규모가 50%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지원금 취소	
사업예산	총사업비	총사업비가 지원신청 시의 60%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단, 지원신청 당시의 금액과 최종선정금액이 큰 폭으로 조정된 경우 예산 비율에 따라 총사업비 편성 가능)	지원금 취소	자부담이 60%이상인 경우 제외
사업내용	주요 사업 참여자	● 주요 출연진 또는 사업(창작) 책임자의 변경 ● 출연진·제작진 50% 이상 변경 및 축소 ● 연출가 변경(연극 분야) ● 안무가 변경(무용 분야) ● 전시기획자 변경(전시 형태 사업) ● 주요 사업기획자 변경(각종 기획사업)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	
	사업형태	타 행사의 일부로 귀속되는 등의 변경	지원금 취소	
	작 품	작품 및 작가 변경	지원금 취소	
	결과물	크기 및 수량이 50% 이상 축소되는 경우 (책자 발간 부수 등)	지원금 취소	
	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 50% 이상 변경(음악/국악)	지원금 삭감	
		창작초연이 재연작품으로 50% 이상 변경	지원금 삭감	
사업수행	사업포기	사업주체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포기	● 지원금 전액 반납 ● 차년도 행정심의에 반영 ※ 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원사업 심의에 반영	

3 집행 및 정산

● 투명하고 정확한 지원금 집행 및 등록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집행 시 사업별 지정된 집행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지원사업의 직접 경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모든 지원금의 집행 및 거래 내역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하며, 정산 시 사업예산에 해당하는 집행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행증빙자료는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지원사업 종료 후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목	집행증빙영수증	
사례금, 출연료 등 인건비성 비용	① 계약서 ② 이체확인증 ③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금 납부 시, 납부영수증 첨부 - 세금 미납부 시, 신고서 또는 신고접수증 첨부(지급액에 무관, 모두 신고) ④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 및 신고 영수증	
회의수당 (자문, 심의 등)	① 계약서 또는 청구서 ② 이체확인증 ③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금 납부 시, 납부영수증 첨부 - 세금 미납부 시, 신고서 또는 신고접수증 첨부(지급액에 무관, 모두 신고) ④ 회의록(회의내용) 첨부	
대관료 및 임차료	**<카드결제>** ① 대관계약서 또는 견적서(요율표) ② 카드영수증	**<계좌이체>** ① 대관계약서 또는 견적서(요율표) ②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또는 지자체 발행 영수증 겸 고지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이체확인증
각종사용료, 인쇄비, 홍보비, 재료 및 자료구입비	**<카드결제>** ①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② 카드영수증	**<계좌이체>** ①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②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이체확인증
금융수수료	① 이체확인증	
해외 출국 또는 해외인사 초청 (국제교류 관련)	① 항공권 사본 ② 출입국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사진있는 면과 출입국도장이 찍힌 면)	

【 집행 증빙서류에 따른 유의사항 】

-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에는 구체적인 단가 산출 또는 원가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 인터넷뱅킹 입금확인증 또는 ATM 출금거래내역서 제출가능(단, 받는 사람 이름, 계좌번호, 입금액, 입금일시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온라인 가상계좌 거래 시, 제출자료 사전 확인하여 진행 (카드거래명세서, 입금확인증 등)
- 전자계산서는 면세사업자나 '부가가치세법 1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만 발급 가능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자 유형 확인 필요)
- 수기(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증빙자료로 부적합

【 관련 지침 발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8조(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하며, 이때 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 유형별 지출증빙서류 수취 가능 여부 】

구분	고유번호증	일반과세자 겸영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X	○	X	업체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전자계산서	X	○	○	X
신용카드매출전표	가맹 시 가능	○	○	○

【 수익금 발생 및 집행증빙자료 제출 】

-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반납을 원칙으로 함
  (단, 수익금을 해당 지원사업에 재투여하는 경우 제외)
- 수익금은 해당 지원사업에 재투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 교부 목적에 맞게만 사용 가능함(지원금 사용가능 항목과 동일한 범위 내 사용 가능)
-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지원금 통장과 별도의 통장으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정산 시 수익금 발생 내역과 집행증빙자료를 지원금과 구분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 지원사업은 공공재원으로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사업이므로, 수익금(티켓 판매 수입 등)을 개인 또는 단체의 이윤으로 귀속시킬 수 없음
- 해당 지원사업에 재투여하지 않은 수익금은 반납해야 함

4 사례비 소득세 원천징수

【 원천징수 제도 】

- 상대방에게 소득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지방세)을 포함합니다.

분류	세율	비고
사업소득	3.3%(지방소득세 포함)	지급액수와 상관없이 납부
기타소득	8.8%(지방소득세 포함)	125,000원 초과 시 납부 125,000원 이하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신고는 해야 하나 납부대상은 아님)

※ 사업소득-소득자가 해당 용역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ex. 무용수가 무용수로 참여하는 경우)
※ 기타소득-소득자가 해당 용역을 비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ex. 무용수가 강의자로 참여하는 경우)

<예시>
출연료가 300,000원인 경우 원천징수 금액 계산

- 사업소득인 경우

출연료 총금액 (계약금액)	원천징수 납부금액			출연자 실지급액
	사업소득세(3%)	지방소득세(0.3%)	계	
300,000	9,000	900	9,900	290,100

- 기타소득인 경우

출연료 총금액 (계약금액)	원천징수 납부금액			출연자 실지급액
	기타소득세(8%)	지방소득세(0.8%)	계	
300,000	24,000	2,400	26,400	273,600

⇒ **출연자에게 원천징수 납부금액 총액을 제외한 실지급액을 지급**
⇒ 원천징수금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신고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원천세 신고 및 납부방법 】

●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 세무서 (국번 없이 126)

세무서명	연락처	관할구역
인천 세무서	032-770-0200	제물포구, 미추홀구, 옹진군, 영종구
남동 세무서	032-460-5200	남동구
연수 세무서	032-670-9200	연수구
김포 세무서	031-980-3200	강화군

세무서명	연락처	관할구역
서인천 세무서	032-560-5200	서해구, 검단구
부평 세무서	032-540-6200	부평구
계양 세무서	032-459-8200	계양구

● **직접 방문 시**

1. 관할 구역 세무서 소득세과 방문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3.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 방문하여 납부
4. 해당 원천세액 납부 영수증은 정산보고 시 제출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의 경우, 신고 시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여 수령

※ 인터넷으로는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와 위택스에 문의 (문의 전화번호: 홈택스 126, 위택스 110)

5 예술인 고용보험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

●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 직업인의 생활 및 고용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보험으로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으며, 예술인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적용 대상	피보험자격 구분	비고
근로자가 아니면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수행하는 65세 미만 예술인	일반예술인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
	특정 사업주와 1개월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단기예술인	
	단기간(1개월 미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공연·영상 제작 등 단기간 참여 예술인	

※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예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월평균소득

- 월단위 계약인 경우: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개월 수
- 월 중간에 계약이 개시되거나 종료된 경우: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일수) x 30

● 적용 제외 대상(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안내 기준)

- 문화예술용역이 아닌 경우
-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만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 피보험자격별 관리 및 보험료 부과/산정

피보험자격	신고	월 보험료 산정	고지납부
일반 예술인	처음 노무를 제공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한번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월평균보수(총소득-25%)×1.6%	국민건강 보험공단
단기 예술인	노무를 제공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일보수 월 합계액×1.6%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kawf.kr) 모의계산기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율: 실업급여요율 1.6%를 예술인과 사업주가 50%씩 균등 부담 (사업주 원천공제)

※ 예술인(출연진 등) 부담분은 소득세처럼 사례비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사업주(지원사업자) 부담분은 기타운영비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납부

- 일반예술인 부과기준 보수: 총 소득(총수입금액) - 25% 공제

※ 단, 부과기준 월 평균보수가 80만원 미만 시에는 기준보수를 80만원으로 함

- 납부: 매월 10일(다음달)

※ 취득일: 노무제공 개시일 / 상실일: 노무제공 종료일의 다음 날

※ 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고용보험(단기예술인) 노무제공 내역 확인신고서

【 신고 및 납부방법 】

● 관련 기관 안내

구분	주요업무	연락처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전담부서	1588-0075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1577-1000
국민연금공단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등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서식 접수	대표번호 국번없이 1355 해외이용 시 +82-63-713-6900

● 신고 및 납부 관련 서식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에서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6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 절차(고유번호증 발급)

【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법인단체) 】

-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체로, 고유번호증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의 세적관리, 원천징수, 과세자료 수집 등을 위해 부여한 납세번호(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증서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임의단체가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과 단체 명의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 대표자 개인명의 통장 사용불가

【 신청 및 발급 절차 】

단체 정관 작성 → 발기인(회원) 구성 (※ 2인 이상) → 단체소재지 준비 (※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임차계약서 등) → 총회 공고 및 개최 (※ 기명날인 필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 (※ 관할 세무서) → 승인 통지 (고유번호증 발급) (※ 관할 세무서)

필요서류	비고
정관	
회원명부	
창립총회 회의록	
단체 대표 임명장	
임대차 계약서	단체 소재지 기준(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임차계약서 등)
단체 직인	단체명의 직인 필수(대표자 개인도장·서명 불가)
대표자 신분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 선임신청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 서식

【 신고 및 문의처 】

-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 세무서

세무서명	연락처	관할구역
인천 세무서	032-770-0200	제물포구,미추홀구, 옹진군, 영종구
남동 세무서	032-460-5200	남동구
연수 세무서	032-670-9200	연수구
김포 세무서	031-980-3200	강화군

세무서명	연락처	관할구역
서인천 세무서	032-560-5200	서해구, 검단구
부평 세무서	032-540-6200	부평구
계양 세무서	032-459-8200	계양구

7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창작활동 자가 점검표

인천문화재단은 예술인 권리 침해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을 통해 공정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창작활동 자가 점검표'를 제작·배포합니다.
예술창작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예술단체와 예술인 여러분께서는 창작 과정의 실행에 앞서 단계별 자가 점검을 진행해 주세요. 결과에 따라 보완·점검이 필요한 지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 단계(16문항)

구분	점검 내용	결과	
사전 협의	참여 예술인에게 사업 정보, 각자의 역할과 업무 및 일정에 관해 충분히 설명합니다.	YES ☐	NO ☐
	참여 예술인에게 섭외된(섭외 중인) 구성원의 명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YES ☐	NO ☐
	포트폴리오는 누구와 공유되는지 사전에 알리고 반환 여부를 안내합니다.	YES ☐	NO ☐
	협의 단계에서 참여 예술인의 사례비(임금)를 제시하거나, 미정일 때에는 충분한 상황 설명으로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YES ☐	NO ☐
서면 계약	계약서 작성일을 참여 예술인에게 사전에 알리며,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집니다.	YES ☐	NO ☐
	장르 또는 영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서를 검토·조정합니다.	YES ☐	NO ☐
	계약 전 구두로 진행된 내용이 실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었으며, 계약서상 본인의 역할, 책임과 의무 관련 조항에 불합리함이 없음을 상호 확인합니다.	YES ☐	NO ☐
	사례비 지급 일자와 원천세 반영 여부, 계약의 효력 발생일·종료일을 명시합니다.	YES ☐	NO ☐
	저작권, 성희롱·성폭력 예방 조항, 산재보험 여부를 명시합니다. ※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안전사고에 대한 공식 대비책을 준비합니다.	YES ☐	NO ☐
	(해당 시) 중계·송출 여부에 따라 상영 회차, 기간 등 협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YES ☐	NO ☐
폭력 예방	대표자 또는 예술인 본인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상황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YES ☐	NO ☐
	참여 예술인 모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합니다.	YES ☐	NO ☐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계적이지 않은 언어 사용을 지향합니다.	YES ☐	NO ☐
	장르, 학력, 출신, 나이,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역할 제한, 고정된 성역할 강요 등 모든 차별을 금하며, 참여 예술인 모두 동등한 발언권을 가집니다.	YES ☐	NO ☐
	성적 농담·혐오, 비하 발언, 비속어 사용을 제한하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하면 즉시 중단합니다.	YES ☐	NO ☐
	작업 목적 외 사적 만남을 강요하지 않으며, 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사적 정보를 유포하거나 가십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YES ☐	NO ☐

점검 결과	결과 안내
YES 11개 이하	예술인 역량강화 기본교육(계약서 작성, 성평등 교육 등)을 수강해 주세요.
YES 12개 이상	예술인 법률상담을 통해 서면계약서, 성평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검토해 보세요.
YES 16개	예술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해 주세요.

실행 단계(10문항)

구분	점검 내용	결과	
설치 실연	제작, 설치 등 실행 과정에서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을 보장합니다.	YES ☐	NO ☐
	제작, 설치 전후에 참여 예술인의 심리·신체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YES ☐	NO ☐
	모든 구성원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YES ☐	NO ☐
	즉흥적 장면이나 폭력, 노출,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부분은 사전에 동의해야 합니다. ※ 연습 시 참관 구성원의 인원 제한, CCTV 등 촬영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YES ☐	NO ☐
	연습실, 작업실에는 참여 예술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비와 물품(식수, 구급약품, 소화기 등)을 갖추도록 합니다.	YES ☐	NO ☐
	작업 과정에서 합의하지 않은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으며, 기록용 촬영본도 누구나 검토할 수 있습니다.	YES ☐	NO ☐
	공연장, 전시장에 진입한 첫날 안전장치와 안전 체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YES ☐	NO ☐
	공연 리허설, 전시 설치 전후에는 현장 변수나 위험 요소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YES ☐	NO ☐
	위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구급 용품과 가까운 병원 동선을 사전 확인합니다.	YES ☐	NO ☐
	(해당 시) 중계·송출의 경우 저작권, 송출 플랫폼, 유/무료 여부를 확인하고 공유합니다.	YES ☐	NO ☐

점검 결과	결과 안내
YES 5개 이하	예술인 역량강화 기본교육(계약서 작성, 성평등 교육 등)을 수강해 주세요. 참여 예술인들이 종합건강검진,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YES 6개 이상	예술인 법률상담을 통해 서면계약서, 성평등을 위한 자체 행동강령을 검토해 보세요.
YES 10개	예술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해 주세요.

사후 단계(6문항)

구분	점검 내용	결과	
자체 평가	사전 자가 점검표의 내용이 기획, 제작의 모든 단계에서 잘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YES ☐	NO ☐
	탈세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행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페이백 요구, 다음 작품 캐스팅 약속에 따른 보수 미지급, 계약 사항 미이행 등	YES ☐	NO ☐
	합평회를 진행할 경우, 일정과 목적, 내용 등을 모든 구성원에게 전달합니다.	YES ☐	NO ☐
	합평회를 녹음 또는 문서로 기록할 경우, 참여자 모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YES ☐	NO ☐
	합평회에 불참하는 참여자에게는 문서 등으로 의견을 전달받고 논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YES ☐	NO ☐
	재공연, 전시 등의 계획이 있다면 모든 참여 예술인에게 그 사실을 공유합니다.	YES ☐	NO ☐

점검 결과	결과 안내
YES 3개 이하	내부 구성원 간 의사소통, 팀 빌딩을 위한 예술인 집단 심리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YES 4개 이상	예술인 법률상담을 통해 불공정행위, 권리보장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신청하세요.
YES 6개	예술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해 주세요.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규정 및 지원금 운영관리규칙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규정

제정 2007. 10. 12. 규정 제40호
개정 2012. 03. 30. 규정 제76호
개정 2023. 08. 25. 규정 제19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재원으로 하는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지원사업"이라 함은 인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활동 또는 문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이 수행하는 고유목적 사업을 말한다.
2. "지원금"이라 함은 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해 재단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예술 활동 또는 문화 사업을 말한다.
4.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인천문화재단 정관」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
2.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신청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지원사업기간
6. 기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교부 결정) ① 대표이사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대표이사가 위촉하며, 심의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다.

1. 법령과 규정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해당 문화예술지원사업 취지 부합 여부
3. 예산편성의 적정 여부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지원금의 교부대상, 교부금액, 교부조건 등을 결정한다.
④ 심의위원은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수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심의위원 해촉 및 심의위원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향후 3년간 심의위원의 자격을 제한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조건) ①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지원금 교부 목적 및 문화예술지원사업의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지원금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지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금은 교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공지) 대표이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 그 결정내용과 조건을 지원 사업 신청자에게 공지해야 한다.<개정 2012. 03. 30.>

제9조(지원금의 교부)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사업자의 교부신청에 의하며,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 대표이사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법령 및 규정,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변경하거나 포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 03. 30.>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의 실적보고) ① 지원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03. 30.>
② 실적보고 방법 및 보고기한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사업 정산검사) ① 대표이사는 제13조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지원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한다. 다만, 정산검사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지원사업 기간 중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300만 원 이하 지원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산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원사업자는 정산결과 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대표이사는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원사업자는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사업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5. 지원사업의 교부내용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6.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산, 평가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보고 를 한 경우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이 시행됨과 동시에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육성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인천문화재단 후원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운영관리규칙

제정 2019. 12. 24. 규칙 제167호
개정 2023. 03. 16. 규칙 제218호
개정 2026. 03. 03. 규칙 제25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이하 “문체부 지침”이라 한다),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및 정산 등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03. 03.>
1. “지원금”이란 재단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재단이 교부하는 지원금 중에서 「보조금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재단에서 지원금을 교부하고 문화예술지원사업 및 지원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지원사업자”란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지원금수령자”란 지원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지원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등 온라인으로 구축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말한다.
7.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보조사업비 카드”란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지원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지원사업자, 지원금수령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정수급 실태점검
2. 지원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3. 지원사업자 관리감독 및 지원사업의 집행점검
4. 그 밖에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원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③ 지원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03. 16., 2026. 03. 03.>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대표이사가 정한 지원신청서와 교부신청서를 기일 내에 작성하여 제출. 단, 심의결과 지원신청 금액과 교부결정 금액이 동일한 경우, 별도의 교부신청서 제출 절차 생

략 가능
2. 지원사업 수행상황을 주관부서에게 보고
3. 사업 완료 시 지원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④ 지원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대표이사의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조건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지원금을 수령하여 지원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 편성) ① 지원사업의 유형별 예산액과 기타 사업비 등 세부집행계획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한다.
② 재단은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의 교부는 지원사업 소요경비의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책상 필요한 전액 지원사업 등 대표이사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1. 모든 항목은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
2. 지원금 교부액의 산출근거는 재단의 예산편성 기준에 준하며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산출근거를 명시.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한 용도나 산출근거로 편성 금지
3. 출장여비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단가를 초과하여 편성·지급 금지
⑤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단, 정책상 필요한 전액 지원사업 등 대표이사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2.단체 대표자의 급여성 인건비 및 당해 지원사업 수행과 무관한 직원의 급여성 인건비 및 단체
3. 당해 지원사업 수행과 무관한 단순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4.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⑥ 지원사업자는 제5항제1호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에 의해 취득한 자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26. 03. 03.>

제5조(지원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지원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통지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재단 규정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사업자 선정기준) ① 대표이사가 지원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동일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 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이후의 지원사업 결정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재단 규정 제15조 각 호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재 조치를 받은 지원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제7조(지원사업자 공모) ①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원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단 규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의하지 아니한다.
② 공모방식을 통해 지원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대표이사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신청 안내 및 사업자 공모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 대상사업
3. 지원신청 자격 또는 대상자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심의평가의 기준
7. 그 밖에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중복수급 확인·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원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지원사업자 선정시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지원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사후에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원심의위원회) ① 공모방식으로 지원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원심의의 운영은 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대표이사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지원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원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업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3. 그 밖에 대표이사가 승인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원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금이 취소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받은 지원

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제32조에 의한 이의 신청 시에는 최종 결과 통보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반납한다.

제11조(지원사업의 포기 등)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조건에 비추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재단이 정한 방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수행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가 제1항에 의한 사업포기를 지원금 교부 후 또는 지원사업자 선정이나 지원심의 결과의 발표일로부터 30일 후에 한 경우에는 동일 사업유형에 관하여 다음 해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대표이사가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지원금 교부 후 지원사업 포기 시에는 포기신고를 제출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교부받은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 교부 조건) ① 대표이사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지원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임을 재단의 로고와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03. 03.>

1. 재단 로고: '재단 누리집'에서 용도에 적합한 CI를 내려받아 홍보물과 인쇄물에 사용
2. 행사 현수막, 홍보물 등: "후원: 인천문화재단"의 문구 또는 CI 명시
3. 서적(판권지), 음반 등 인쇄물: "이 책·음반은 인천문화재단의 0000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또는 사업명)으로 발간·제작되었습니다"의 문구 명시
4. 기타 지원사업 수행 관련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 제작시 유의사항은 재단의 지침에 따른다.

③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간이 계약양식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면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03. 03.>

1. 계약 금액
2.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④ 재단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성과측정과 평가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지원사업자는 재단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원사업 중에서 대표이사가 문화예술사적으로나 문화예술지원 정책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지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는 별도로 예술활동 결과물 자료 각 2부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 교부방법) ① 지원금은 지원사업자의 교부신청에 의해 사업시기에 맞춰 사업개시 3개월 전(국제교류 등 특정사업의 경우 최대 6개월 전)부터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교부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지원금 교부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을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금 결정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지원금을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최종 교부할 때에는 그 때까지 교부된 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03. 03.>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③ 대표이사는 지원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지원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자부담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또는 선행조건의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원금의 연례적 이월 및 지원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지원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지원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지원금 또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지원사업의 내용 변경 등)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자 선정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그 내역과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 보조비목 내에서의 보조세목 간의 전용은 예외로 한다.

② 지원사업의 변경 계획이 지원 신청 및 심의 당시의 지원목적과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가 사업내용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이나 사유에 따라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 내용 변경으로 사업의 규모가 지원 신청 및 심의 당시의 규모에 비해 현저히 축소될 경우 대표이사는 지원심의에서 적용한 보조금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당초 결정하였던 지원금액을 축소·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 추진 도중 단체 대표자 변경 발생시 신속히 서면으로 대표자변경 신청 후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 담당자 등의 변경이 있을 시에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지원사업의 인계 등) ①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으로 위탁하여 수행할 수 없다.

② 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원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그 내역과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원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원사업자는 주관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지원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해당 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삭제 <2026. 03. 03.>

④ 지원사업자는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강사료, 원고료, 인건비 등의 각종 수당 및 사례비는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사업의 수행 요구) ① 대표이사는 지원사업자가 법령,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조건 또는 법령이나 이 규칙에 따른 대표이사의 처분에 따라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지원사업자가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원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조(지원금 사용방법) ① 지원금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직접 경비 지원이 원칙이며, 지원금 지원이 불가하는 항목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지원금 사용방식은 지원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원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③ 지원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금액을 사전에 단체대표, 담당자 등이 먼저 집행한 후 그 금액만큼을 해당자에게 계좌이체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경우 현금지출 사유와 함께 집행내역 및 영수증을 해당금액 이체영수증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관부서에서 현금사용 집행내용을 검토한 후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집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지원금은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사전 집행은 금지한다.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는 사후에 지원금으로 대체하여 보전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전 집행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지원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2의 업종에는 지원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사업자는 별표 2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지원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별도 계정 등)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교부신청시 지원사업별 계좌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별로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단체(지원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대표이사는 지원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원사업의 수익금으로 자기부담분을 충당하거나 지원사업의 수행 중에 자기부담금을 확보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지원사업자 선정 또는 지원금 교부 과정에서 승인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자 또는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제22조(수익금 관리 기준) 지원사업의 수행 기간 중 발생된 수익금은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지원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 추진 완료 전에 예산(수익금) 집행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03. 03.>

제23조(지원사업비의 이월)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지원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① 대표이사는 지원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 및 재단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및 집행잔액과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 받아야 한다. 지원사업자는 집행잔액과 결산이자를 별도로 구분해서 주관부서와 사전협의 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제1항의 대표이사가 정하는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는 등 주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안내」로 정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국제교류사업의 경우 실적보고 제출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 집행과 관련한 해당인의 항공권사본과 여권사본(사진이 있는 면과 해당하는 출입국도장이 찍힌 면) 또는 항공권 사본과 출입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한 경우 동 사업을 위해 출국한 인원 전체 제출
2. 해외인사를 초청한 경우 초청인사의 서류
④ 지원사업자는 실적보고서상의 계량적, 비계량적 실적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의 평가 결과는 지원사업자의 평가점수로 누적되어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될 수 있다.
⑤ 지원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사업 정산보고 시 부가가치세 미환급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 03. 03.>
⑥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대표이사는 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대표이사는 제24조의 지원사업 실적보고서를 재단 관련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지원사업자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지원사업자에게는 지원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대표이사는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원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90일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지원금 삭감
2. 180일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지원금 삭감
3. 360일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지원금 삭감

제26조(정산보고서의 검증) 지원사업자는 사업운영 관리에 필요하여 대표이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자료보관) ① 지원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료 또는 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는 「보조금법」 제26조 5항을 따른다.

제28조(지원사업 집행점검) ① 대표이사는 「보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지원금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세부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자를 선정한 지원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원사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지원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표이사는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지원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지원사업점검평가단) 대표이사는 제28조의 지원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지원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30조(지원금의 취소) ①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 내용이나 조건 또는 법령이나 이 규칙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지원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31조(지원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① 지원사업자 또는 지원금수령자가 「보조금법」 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지원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지원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지원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지원사업 수행제한 또는 지원금 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지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송달시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해당자의 주소, 거소 등이 모두 분명하지 않아 해당 결정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公示)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결정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원사업자는 제32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2조(이의신청)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지원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원사업의 수행 배제, 지원금의 수급 제한, 그 밖에 지원금의 교부에 관한 대표이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대표이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가 제1항의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대표이사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12. 24. 규칙 제1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3항의 규칙에 대해서는 본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진행된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3. 03. 16. 규칙 제223호>

이 규칙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03. 03. 규칙 제255호>

이 규칙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원금 지원 불가 항목

세 목	내용
자본적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등
단체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식대 등 행사 부대경비	사업준비 또는 진행비 성격의 회의비(식비), 간담회비, 다과비 등의 식대 경비 및 행사 기념품 구입비 단, 외부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등 사업 성격상 필요할 경우 최소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재단과 사전협의)
여비(준비비)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등(단, 재단이 사전 승인한 경우 제외)
업무추진비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상금, 상금 심사비 등
기타 사항	행사 기념품 구입,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금융 관련	**OTP, 공인인증서, 카드연체수수료는 지원금에서 집행할 수 없음**

[별표 2]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인천문화재단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이용안내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이용안내**

인천공연예술 연습공간

인천공연예술 연습공간은,

인천광역시와 인천문화재단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예술창작 공간입니다. 70년대 고지대의 급수를 위해 설립되었지만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옛 상수도 가압펌프장을 새롭게 개조한 이곳은, 공연예술단체에게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하고 예술인 네트워크 장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생활에 가장 중요한 식수공급에서 예술의 꽃에 물을 주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은, 지역 공연예술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장소를 제공하고 '창작- 연습- 공연'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통해 공연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합니다.

대관 공간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은 총 2개 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연습실 1개소(약 52평), 중연습실 1개소(약 24평), 리딩룸 1개소(약 7평)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 운영 및 대관료

- 운영시간: 월 ~ 토요일 10:00 ~ 22:00
- 휴 관 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기타 인천문화재단이 지정하는 날

구분	오전 10:00-13:00	오후 14:00-17:00	저녁 18:00-22:00	전일사용요금
대연습실	20,000원	20,000원	20,000원	40,000원
중연습실	1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리 딩 룸	무료 사용			

대관공간 구성

구분	위치	면적	구비시설
대연습실	B동	172.0㎡	피아노, 보면대, 접이식의자, 댄스바, 덧마루, 유·무선 마이크 등
중연습실	A동	80.6㎡	피아노, 유선 마이크, 보면대, 댄스바 등
다목적실 (리딩룸)		88.2㎡ (23.1㎡)	유선 마이크, 빔프로젝터, 스크린, 테이블, 의자 등

대관 안내

- 정기대관
  - 상·중·하반기로 나뉘어 대관 신청 및 심의 진행
  - 상반기: 1~4월 / 중반기: 5~8월 / 하반기: 9~12월
- 수시대관
  - 정기대관의 잔여일수 대관 신청 가능
  - 신청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일정만 예약 가능
- 대관 절차

인천문화재단 접속 → 대관 신청 → 대관 심의 → 대관 승인 → 대관료 납부 → 대관 확정

대관 신청 자격 제한

- 강습목적의 대관
- 연습공간을 단체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참가자 통제가 불가능한 행사 (예: 공연, 오디션 등)
-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타 대관자의 이용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경우
- 대관신청 주체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지닌 경우
- 기타 재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공연예술 연습공간

-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222
- 연 락 처 032-868-9162~3
- 홈페이지 www.ifa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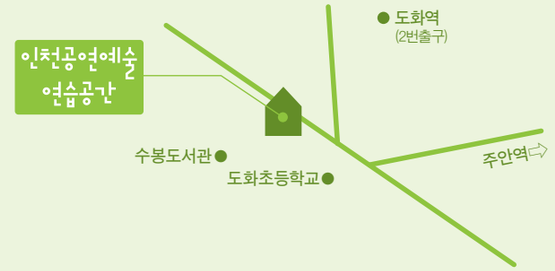

인천문화재단

통합신고센터 안내

인천문화재단
통합신고센터

인천문화재단 통합신고센터

인천문화재단은 임직원 부정부패 행위 방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 인권보호 등을 위해 관련 부당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제보자의 IP 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익명을 보장합니다. 다만, 신고인 보호 및 필요시 분리 조치 등을 위해 일부 신고대상은 기명 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신고대상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
- 부당이득 수수 행위
- 보조금 부정 수급
- 성범죄 행위(기명 신고)
- 인권침해 행위

신고처

-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ifac.or.kr): 홈페이지 하단 [경영철학] - [통합신고센터]
- 레드휘슬 헬프라인(www.redwhistle.org): 조직명(회원사명)으로 “인천문화재단” 검색

신고절차 안내

시스템 접속 → 익명 신고서 또는 기명 신고서 선택 → 신고유형 선택 →
세부내용 기재 → 접수 완료 → 처리결과 확인

인천문화재단

뉴스레터

‘파도파도’ 안내

인천문화재단 뉴스레터 **‘파도파도’**

파도파도

일상에 예술이 필요할 때, 인천 문화 파도 타볼까요

인천문화재단 뉴스레터 파도파도

인천문화재단 뉴스레터 〈파도파도〉는 작은 예술의 파도가 모여 큰 흐름을 만든다는 의미를 담아, 인천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화예술 소식을 전합니다.
전시, 공연, 창작지원, 인터뷰 등 인천의 예술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며, 시민과 예술인을 연결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광고 중입니다’ 코너

‘예술가를 위한 메가폰’은 인천의 예술인과 단체가 직접 알리고 싶은 창작활동, 공연, 전시, 프로젝트 소식을 유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소개하는 참여형 코너입니다.
〈파도파도〉 속 ‘예술가를 위한 메가폰’을 통해 당신의 예술활동이 시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신청은 2027년 초 뉴스레터 〈파도파도〉를 통해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일정, 형식 등은 추후 공지됩니다.)

구독 및 문의

- 구독신청: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ifac.or.kr) - [뉴스레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427576)
- 문의메일: ifacpr@ifac.or.kr